

# 유치원 규칙 신규 대조표

외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

현 행	개 정 안	수정사유
<p>&lt;신 설&gt;</p>	<p><b>제 5 장 【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】</b></p> <p><b>제10조【생활지도 범위와 방식】</b>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</li> <li>2.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·사용</li> <li>3.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</li> <li>4.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</li> <li>5.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</li> <li>6.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</li> <li>7.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</li> <li>8.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</li> <li>9.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</li> <li>10.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</li> </ol> <p>② 위 사항에 대해 「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」제2장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, 상담, 주의, 훈육할 수 있다.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.</p> <p>③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</li> <li>2.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</li> <li>3. 기타 교원 및 원장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</li> </ol>	<p>- 내용 추가</p>

**제11조[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]** ① 원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원장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, 통합학급의 유아 수 감축,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[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]**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13조[이의제기]** ①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.